

보상계획 열람공고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논산시 고시 제2016-45호, 2016.05.02.] 및 중교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0-121호, 2020.03.20.]에 의거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중교천)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4. 10.

논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중교천)
- 나. 시 행 청 : 논산시(희망마을건설과)
- 다. 위 치 : 논산시 대교동, 화지동 일원
- 라. 사 업 량 : 하천정비 L=2.15km(복개구간 471m)
- 마. 사업기간 : 2016. 10 ~ 2021. 05(56개월)

2. 대상물건

- 논산시 대교동 202-1 ~ 화지동 207-66번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간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04 .10. ~ 2020. 04. 24(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중교천T/F팀

4. 보상시기 : 2020년 5월 이후

5. 보상방법 및 절차

편입토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결과에 의하고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한 후 개별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한 다음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6. 감정평가의 선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는 충청남도 1인, 사업시행자가 1인을 선정하며,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7. 감정평가의 선정 요청방법(동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1회만 가능)

8. 기타사항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나 수취인 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될 경우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논산시청 희망마을건설과 종교천 T/F팀(☎041-746-6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각1부. 끝.